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주철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93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구성체계	4
(1) 제정안의 발의배경	4
(2) 제정안의 구성체계	8
2. 국회 논의경과	10
(1) 관련 법률안 심사경과	10
(2) 21대 공청회 주요 내용	12
3. 주요 조문별 검토	14
(1) 목적 및 정의 등	14
(2)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원칙 및 기준 등	18
(3)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 등	24
(4) 해양관할구역 획정 절차	30
(5) 보칙 및 부칙	39
4. 관계부처 의견	43
(1) 해양수산부	43
(2) 행정안전부	43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2일 주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은 2024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양의 이용 및 개발이 다변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가 명확한 육상과 달리 해양관할구역은 이와 관련한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나,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또한 법률상 근거가 부재하여 재판의 결과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획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관
리·보전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과 획정 기준을 정하고, 관계 지방
자치단체 상호간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확인이나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나. 해양관할구역획정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해양관할구
역획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
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해양관할구역획정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
15조 및 제16조).
-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할구역획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대한 합의안을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
회에서 획정안 또는 획정합의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18조
부터 제20조까지).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양관할구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구성체계

(1) 제정안의 발의배경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어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미치지¹⁾지만, 지금까지 우리 법체계에서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 바 없어 해양관할구역과 관련한 지자체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관련 주요 분쟁 사례 】

사 건 명	발단	결과
웅진군과 태안군 간의 권한쟁의 (2009.7.30. 2005헌라2)	해사채취허가처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 (‘65, ‘69, ‘71)을 합리적으로 연결한 선
홍성군과 태안군 간의 권한쟁의 (2015.7.30. 2010헌라2)	어업면허 처분	등거리·중간선 적용 확정 → 어업면허 처분 일부 무효 확인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등 (2019.4.11. 2016헌라8등)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	등거리·중간선 적용 확정 (간출지, 갯골 등 예외를 인정하여 일부 조정)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2021.2.25. 2015헌라7)	어업면허 및 허가 권한	‘73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 인용 → 청구 기각
경남 남해군과 경남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2024.8.29. 2022헌라1)	공유수면 점·사용 처분	등거리·중간선 적용 확정 (남해군 새우조망어업구역 불문법상 경계 인정)

*자료: 해양수산부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

□ 1980년 이후 해양 관할구역과 관련된 지자체 간 분쟁은 총 29건(매립지 9건, 공유수면 20건)으로 「첨부1 참고」, 관련 분쟁 중 다수가 대법원 소송이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거쳐 분쟁 해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경계 설정이 분쟁 구역에 한정되어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 결정 기준은 ①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②불문법상 해상경계를 따르며, 불문법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③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관련 법령의 현황, 연혁적인 상황, 행정권한 행사 내용, 사무 처리의 실상,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나²⁾, 해양 관할구역의 설정 권한이나 기준과 관련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헌법재판소 판시 】

2015. 7. 30. 선고 2010헌라2 결정 중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권한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법령이나 행정관습법이 없다 하여 이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나 관할권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창설할 수는 없다. 아무리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관할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2)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역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경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고,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문법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불문법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민, 구역과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관련 법령의 현황, 연혁적인 상황, 행정권한 행사 내용, 사무 처리의 실상,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5헌라7 결정)

고 하더라도, 그러한 분쟁을 해결할 기준은 헌법과 법령에 정해진 대로 하여야 할 것이지, 헌법재판소가 그 기준을 새로 창설하는 방법으로 입법,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다. (중간 생략). 이 사건처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산업법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업수역을 조정하거나, 시·군·자치구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담당하는 수산조정위원회가 어업 분쟁을 해결하면 될 일이지 법령에 근거도 없이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에 관한 일반적인 관할구역을 새롭게 창설하는 것은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맡긴 권한을 넘는 것이고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결정이다.

- 한편,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다수의 법률에서는 지자체 간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각종 계획 및 처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³⁾ 해상경계가 존재하지 않아 조업구역 등 해상경계 위반으로 어업인이 입건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⁴⁾
- 특히 최근에는 지자체간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이 조업구역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등 대규모 해양 개발사업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어 중요 국책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⁵⁾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해상풍력 등 해양 개발사업에 차질이 우려됨.
- 이에 제정안은 해양 관할구역에 대한 분쟁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획정의 기준·절차 등을 마련하여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그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상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수산업법」 상 어장이용개발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해양공간관리계획 등

4) 충청남도과 전라북도의 해상경계에 대한 성문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조업구역 위반으로 충남 어업인이 150여 회 입건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5)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라남도 완도와 제주 간 해상경계 갈등으로 2,000억원 규모의 해저송전선 사업 추진이 중단된 바 있음

- 다만, 이 법에 따른 해양관할구역 확정방법은 ①해양수산부 장관이 관할구역 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관할구역 확정심의위원회의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관할구역을 확정하는 경우와 ②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등에 신청을 통해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경우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신청에 의한 경우는 그 적용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만큼 보다 이해가 쉽도록 법률 용어와 체계를 일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또한, 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제시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3조(해양관할구역확정추진단 등) 등은 조정이 필요함.

(2) 제정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은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의 제명으로 5장 24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본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해양 관할구역 획정의 원칙 및 기준 등 제5조(해양 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 제6조(해양 관할구역 획정 기준) 제7조(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합의의 반영) 제8조(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해양관할구역)
	제3장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자료 제출의 요청 등) 제13조(해양관할구역획정추진단 등) 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장 해양관할구역 획정 절차 제1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17조(조사 및 측량 등) 제18조(해양관할구역획정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제19조(획정합의안의 제출 및 반영 등)

	제20조(획정안의 심의·의결 등) 제21조(해양관할구역의 결정 및 불복 등) 제22조(신청에 따른 해양 관할구역의 확정 등)
	제5장 보칙 제23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24조(청문)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법원의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분쟁해역에 대한 유예조치) 제4조(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중인 해역에 대한 유예조치)

2. 국회 논의 경과

(1) 관련 법률안 심사경과

- 해상경계 설정과 관련한 입법 추진은 그간 몇 차례 있었으나 부처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이견, 매립지 귀속 결정 중인 해역에 대한 절차 마련 등으로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 2007년도에 행정자치부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법률안 마련을 추진하였으나 갈등이 촉발될 우려가 있어 추진을 중단한 바 있고, 2015년도에 발의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 간 이견이 있어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2020년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별도 법안 마련을 조건으로 논의가 보류되었음.
- 2023년도에는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확정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발의되어 3차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쳐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매립지에 따른 해상경계 선과 관련하여 보완·수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으로 전체회의 의결 단계에서 계류된 바 있음.

【 해상경계 설정 관련 입법 추진 경과 】

연도	구분	주요 내용 및 경과
'07	행정자치부	-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법률안 마련을 추진 ('06~'07), 갈등 촉발 우려로 추진 절차 중단
'15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 의원)	- 지자체 간 합의가 없는 경우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고, 등거리 중간선 설정 시 역사적 사실·상황, 자연적 조건, 이용실태 및 주민의 편의 등을 종합 고려 - 행정자치부가 해양 관할구역 설정·조정 등을 수행, 해양수산부는 수로조사 및 해양 관할구역 등록·관리를 수행 - 행정자치부는 해양관할구역 설정 업무는 해양수산부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해양수산부는 「정부조직법」 상 지자체간 분쟁 및 관할구역 조정은 행정자치부 소관이므로 해양수산부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필요 의견 제시 -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
'2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주철현 의원)	- 현재 공유수면이 속할 지자체 경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준용할 수 없는 경우 관습에 의한 경계에 따르도록 개정 - 행정안전부는 공유수면 관할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로 규정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 - 별도 법안 마련을 조건으로 논의 보류
'23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 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 (안병길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주철현 의원)	- 현재 결정례를 반영하여 획정 기준을 제시하고, 계획 수립, 조사·측량, 심의·의결, 결정 및 불복 등 절차 규정 - 지자체 신청에 의한 획정을 우선하되, 해수부 장관의 추진계획 수립을 통한 획정을 허용하고, 획정안 마련 등 획정 절차에서 행안부 장관과 협의 규정 - 원활한 획정 절차 진행을 위한 획정심의위원회 구성, 획정추진단 설치, 전문기관 지정 등 규정 - 3차례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대안을 의결하였으나, 전체 회의 의결 단계에서 일부의원 이견 개진으로 계류 -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계류 중 임기만료폐기

(2) 21대 공청회 주요 내용

□ 한편, 21대 국회에서는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공청회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해양관할구역 획정방식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자체의 신청 외에도 해수부장관이 계획 수립을 통해 해양관할구역을 설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우선하고, 보충적으로 해수부 장관이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②사정변경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신청 허용 관련 주민 불편 등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신청 허용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제반 사정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신청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③지자체 간 합의안 반영여부 관련 합의안 반영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자체 자치권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합의안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당시 공청회 참석한 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해양관할구역을 종전과 같이하거나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설정(확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합하고, 지자체 간 합의안 반영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수부장관이 직권으로 해양관할구역을 설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김남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수부장관이 계획수립을 통해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승이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행정부가 해상경계를 확인·확정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당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지자체 간 합의안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주요 조문별 검토

1) 목적 및 정의 등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양관할구역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양의 효율적 이용·관리·보전 및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제정안의 목적에 대하여, 안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및 ‘등거리·중간선’의 용어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는 해양관할구역 설정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해양관할구역의 획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보전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한 토지의 바다 쪽 경계로부터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의 외측한계(外側限界)에 이르는 해역 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구역을 말한다.
2. “등거리·중간선”이란 서로 인접하거나 마주하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점(起點)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함에 있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해양관할구역의 획정·변경 및 유지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이 획정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목적)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해결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제정안에는 기본계획·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구역을 획정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른 해양관할구역의 획정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정의) 안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을 “지적공부⁶⁾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⁷⁾”에 이르는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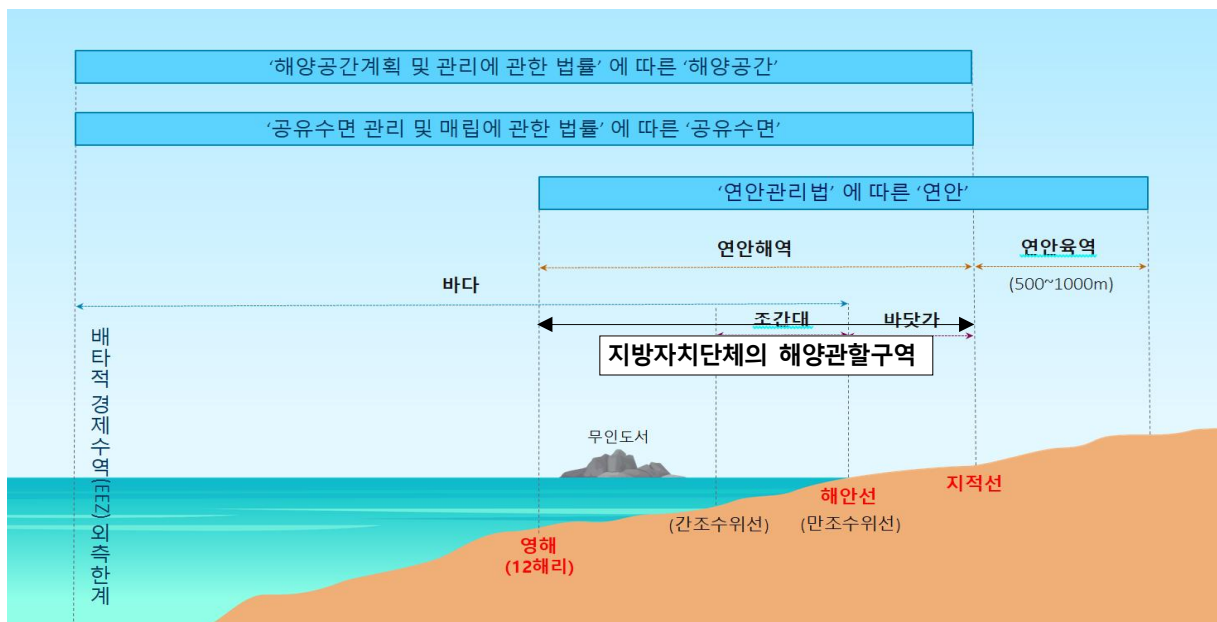
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과 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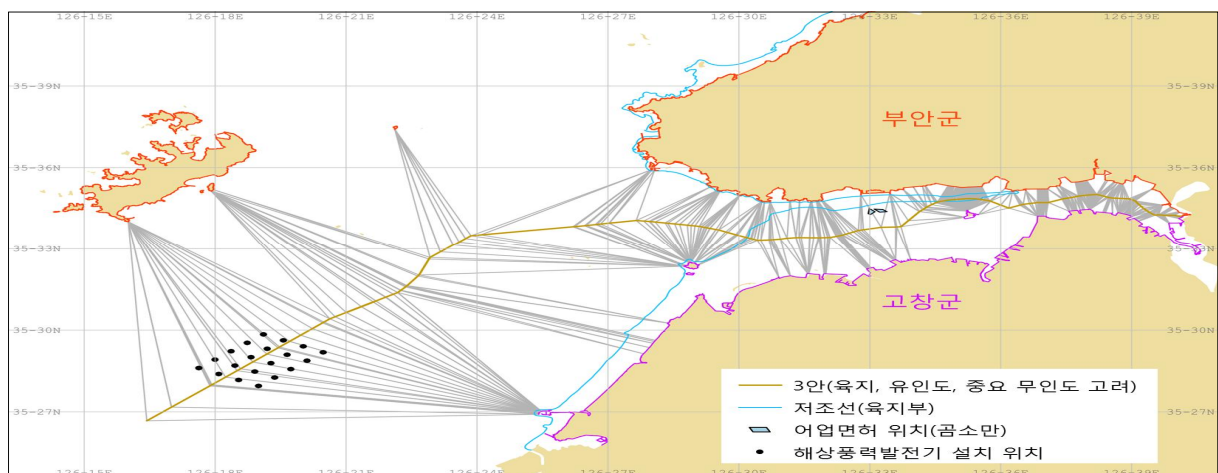
해역 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구역으로 정의하고, 등거리
 · 중간선은 각 지자체의 “기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연결한
 선으로 정의하여 각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해양공간 및 지자체 해양관할구역 등 개념도 】



*자료: 해양수산부

【 등거리 · 중간선 예시 】



*자료: 해양수산부

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그런데, 안 제2조제2호의 등거리·중간선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점”이 어디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등거리·중간선을 설정하는 기점은 유인도, 무인도 등 도서의 고려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모든 구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설정할 수 없고, 이는 안 제9조에 따른 해양관할구역확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기점의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해양관할구역확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더라도 기점의 정의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확정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규정⁸⁾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이 법에 따라 지자체 해양관할구역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해상 구역도 ‘중전’과 같이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8)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중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2)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원칙 및 기준 등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5조는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과 지자체의 장이 해양관할구역 획정 및 분쟁의 해결이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으로서 ①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 경계선, ②대상 해역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실태 및 행정권한의 행사 내용, ③지적공부에 등록된 도서의 행정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안 제7조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합의를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안 제8조는 행정시·구 등의 해양관할구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장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원칙 및 기준 등 제5조(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해양접근성 확보와 이용에 관한 형평성 2.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행정적·경제적 및 생활상 이익의 침해 최소화 3. 해양의 효율적 이용 4.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이나 관련 분쟁의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이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6조(해양관할구역 확정 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
2. 관할구역 확정 대상 해역(이하 “대상 해역”이라 한다)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실태 및 행정권한의 행사 내용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서(島嶼)의 행정구역
4. 행정구역의 관할 변경 이력
5.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6. 주민의 행정적·경제적 이익
7. 대상 해역에 관한 사무처리 현황
8. 대상 해역과 관계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현황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의 기준에 따른 해안선
9. 등거리·중간선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관할구역 확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합의의 반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확인이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해양관할구역)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행정시·구”라 한다) 및 읍·면·동의 해양관할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례로 행정시·구 또는 읍·면·동의 해양관할구역을 정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광역시장·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해양관할구역 확정의 기본원칙) 안 제5조제1항은 해양관할구역 확정 시 ①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해양접근성 확보와 이용에 관한 형평성, ②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행정적·경제적 및 생활상 이익의 침해 최소화, ③해양의 효율적 이용, ④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 및 해양 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 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안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 같은 항 제2호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분쟁 시 제시하던 원칙,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해양을 관리하는 기본방향인데 각 내용을 해양관할구역 확정 기본원칙에 반영한 것임.

□ 안 제5조제2항에서는 해양관할구역 확정이나 분쟁 시 이 법이 규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청구 전 이 법의 절차가 사실상 전치주의적인 기능을 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됨.

즉, 해양관할구역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률에 따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여짐.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정안에 따른 해양관할구역의 확정은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 데,

①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는 획정(안 제15조 및 제16조), ②해양의 이용 등에 있어서 관할구역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획정(안 제22조제1항제1호), ③지자체간 해양 관할구역 관련 분쟁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지자체 신청에 따른 획정(안 제22조제1항제2호)이 있음.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 법의 적용 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는 ①, ②의 경우 안 제5조제2항에 근거하여 이 법이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③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이 법의 절차를 선행적으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제한할 여지가 있고⁹⁾, 헌법재판소의 사후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¹⁰⁾

□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 안 제6조는 그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에서 기준으로 적용하던 사항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그간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와 관련하여 ①명시적인 법령상 규정→ ②불문법상 해상경계 → ③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관련 법령의 현황, 연혁적인 상황, 행정권한 행사 내용, 사무 처리의 실상,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였음.

9) 안 제21조에 의할 때 해양관할구역의 결정이 있는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③의 경우는 이와 별개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10) 우리나라는 사후적,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은 추후 구체적 사건으로 청구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 안 제6조 각 호의 내용은 지자체별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특정 기준이 우선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해양관할구역 확정 기준 예시 】

구분		상세 내용
1호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	• 조선총독부 시절 지형도부터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국가기본도에 이르기까지 해상경계 표시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불문법상 경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지 판단
2호	관할구역 확정 대상 해역(이하 “대상 해역”이라 한다)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실태 및 행정권한의 행사 내용	• 행정 관할을 둘러싼 연혁적 상황 • 해상 경계 분쟁 발생 현황(분쟁사유, 해결여부 등) • 해상 경계 관련 사법기관의 경계 판단 여부 및 이유 • 해경, 기상청 등 관계기관 업무 관할범위 및 변경 이력 등
3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서(島嶼)의 행정구역	• 도서의 관할 및 변경 이력 • 유·무인도 여부, 거주 주민 규모, 생활권 범위
4호	행정구역의 관할 변경 이력	•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른 지자체 구역 변경 이력 등
5호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 육지와와의 지형학적 연결 상황 • 대상 해역의 해저 지형 • 대상 해역을 관통하는 해류의 속도와 방향 • 간조 시 형성되는 지형(갯골이나 갯벌 등) 등
6호	주민의 행정적·경제적 이익	• 주민의 거주 역사와 현황 • 주민의 생활 여건과 방식 • 어업활동 수역 범위 및 생활권역 형성 현황 등
7호	대상 해역에 관한 사무 처리 현황	• 어업면허 발급 및 관리 현황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 • 연안관리계획 등 행정계획 수립현황(대상범위) 등

8호	대상 해역과 관계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현황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의 기준에 따른 해안선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 확인 • 해안선 현황 및 변경 이력 등
9호	등거리·중간선	• 관계 지자체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고자 하는 규범적 관념에 기초하여, 현재 국제적 해상 경계 분쟁에서도 유력한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는 점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합당성을 지님

*자료: 해양수산부

□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합의의 반영) 안 제7조의 경우 해양관할구역 확정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확인이나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해양관할구역 확정심의위원회 등이 일방적으로 해양관할구역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우선하려는 조치로 생각됨.

3) 해양관할구역확정심의위원회 등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해양관할구역확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는 해양관할구역확정기본·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해양관할구역확정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는 회의 소집, 정족수, 의견청취, 자료 제출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확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보좌를 위한 해양관할구역확정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함)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확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3장 해양관할구역확정심의위원회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확정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관할구역확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수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5조에 따른 해양관할구역획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6조에 따른 해양관할구역획정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양관할구역획정안
4. 제22조에 따른 해양관할구역 획정 절차의 시작 여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자료 제출의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에 의견을 밝히거나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해양관할구역확정추진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확정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보좌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관할구역확정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5조에 따른 해양관할구역확정기본계획의 입안

2. 제16조에 따른 해양관할구역확정추진계획의 입안

3. 제17조에 따른 조사 및 측량 등

4.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양관할구역확정안의 작성·수정 및 변경

5. 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안건 사전 검토 등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확정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해양관할구역확정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해양관할구역확정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확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를 게을리 수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해양관할구역확정심의위원회 등)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해양관할구역확정 관련 계획,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확정안,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수렴 결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작성한 해양관할구역 확정에 대한 합의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확정 업무를 수행하게 됨.

즉, 안 제21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에서 실질적 확정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임.

- 특히 안 제9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166조¹¹⁾에 따른

11) 「지방자치법」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73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양관할구역 확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에서 해양관할구역확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살펴보면, 제22조에 의한 신청에 따른 해양관할구역 확정 등의 경우에는 심의·의결 사항으로 “제22조에 따른 해양관할구역 확정 절차의 시작 여부”로 안 제1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신청에 따른 관할구역확정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위원회 주요기능의 하나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일부 문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해양관할구역확정추진단 등) 안 제13조는 추진단을 두어 업무의 전문성·체계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해 보좌하도록 하며, 지자체에도 해양관할구역확정지원단을 둘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임.

- 다만, 해양수산부 내에 추진단을 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조직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해당 조문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 행정안전부는 개별 법률에 정부조직에 관한 사항인 추진단 설치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률 제정 이후 해양수산부의 법정 사무 및 업무량, 기존 조직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직 보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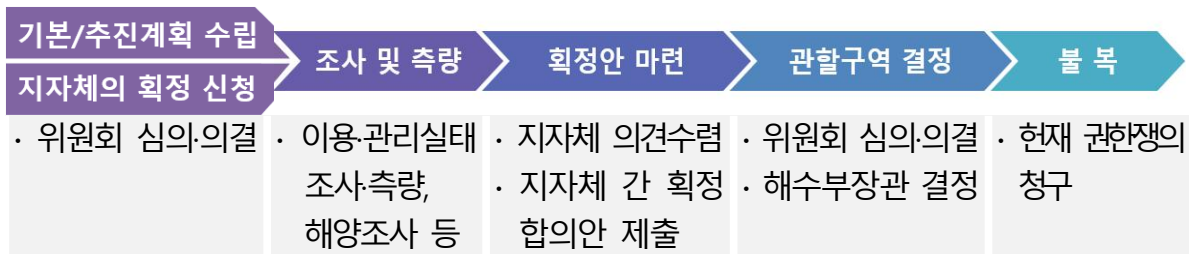
- (전문기관의 지정 등) 안 제14조는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해서는 해양의 이용·관리 실태 조사, 수로 측량 등 해양조사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4) 해양관할구역 확정 절차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해양관할구역 확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

【 해양관할구역 확정 절차 】



- 안 제15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해양관할구역획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안 제16조는 매년 해양관할구역설정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7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현황과 지자체의 해양 이용·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 등(이하 “조사등”이라 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8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등 완료 시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획정안(이하 “획정안”이라 함)을 작성하도록 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에서는 관계 지자체장은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대한 합의안 (이하 “획정합의안”이라 함)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반영하여 획정안을 작성·수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안 제20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획정안, 관계 지자체장의 의견수렴 결과 및 획정합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하려는 것임.

안 제21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을 결정하고, 관계 지자체장은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안 제22조는 지자체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관할 구역 획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4장 해양관할구역 획정 절차
제1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 마다 해양관할구역획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해양관할구역 획정 추진 방향 및 원칙 2. 제16조에 따른 해양관할구역획정추진계획의 수립 방향 3. 제2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획정 신청 수요조사 계획 4.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고시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의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할구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해양관할구역확정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대상 해역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
2. 해양관할구역 확정 관련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관할구역 확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고시된 추진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의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 및 측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을 확정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측량,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조사 및 해당 구역의 이용·관리 실태 조사 등 제6조에 따른 해양관할구역 확정 기준에 따라 조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조사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해양관할구역획정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조사등을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획정안(이하 “획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30일의 범위에서 의견수렴 기간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획정안을 수정·변경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획정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획정합의안의 제출 및 반영 등)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해양관할구역 확정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한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대한 합의안(이하 “획정합의안”이라 한다)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기간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획정합의안을 반영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른 획정안을 작성하거나 수정·변경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획정합의안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의견수렴 기간을 9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확정합의안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확정안의 심의·의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확정안,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결과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합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확정안 및 확정합의안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사 및 재조사 결과에 따른 확정안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해양관할구역의 결정 및 불복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판 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만료되거나 제4항에 따라 다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을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해양관할구역의 결정 및 통보·공고 방법, 제5항에 따른 해양관할구역의 확정 및 공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신청에 따른 해양관할구역의 확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관할구역 확정을 신청(이하 “해양관할구역확정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해양의 이용, 관리 및 보전에 있어서 관할구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확정된 해양관할구역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양관할구역 확정 절차의 시작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해양관할구역 확정 절차의 시작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그 밖에 해양관할구역확정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15조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해양관할구역 확정 추진 방향 및 원칙, 지자체의 확정 신청 수요조사 계획, 해양관할구역 확정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추진계획의 수립 등) 안 제16조에 따르면 추진계획에는 연도별 대상 해역 및 관계 지자체, 해양관할구역 확정 관련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데,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에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법률에 명시되지 못한 원칙이나 개별적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 (확정합의안의 제출 및 반영 등) 안 제19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할구역을 확정하는 절차와 별개로 관계 지자체장들 간 확정합의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간 합의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경계확정을 원활히 하는 등 행정적 비용을 절감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동 제정안의 취지 자체가 지자체 해양관할구역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 및 주민들 간 해상경계에 관한 관행이 있어 온 경우나 서로의 이해에 맞는 합의를 도출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신청에 따른 해양관할구역의 확정 등) 안 제22조는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확정과 별도로 지자체장이 해양관할구역 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분쟁을 조정하려는 취지로, 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①해양의 이용, 관리 및 보전에 있어서 관할구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②지자체간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이 법에 따라 확정한 해양관할구역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지자체의 기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임.

이 중 ③을 보다 자세히 보면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지자체의 기점 변경뿐만 아니라 시·군 간 통폐합 등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해양관할구역 변경신청이나 침식·침수 등 대규모 자연재난에 따른 급격한 해안선의 변화 등의 경우에도 해양관할구역확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그리고 안 제22조제3항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자체 장의 신청에 따라 확정절차의 시작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17조부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신청에 의한 경우 역시 해양수산부장관에 의한 조사 및 측량(안 제17조),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관할구역획정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안 제18조), 확정합의안의 제출 및 반영(안제19조), 위원회의 심의·의결(안 제20조), 해양관할구역의 결정 및 불복(안 제21조) 등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여짐.

- 다만, 제정안은 조문에서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양관할구역획정신청을 하였는데 위원회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절차의 ‘시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이 법이 규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원회에서 확정을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에 대해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안 제22조제2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리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실제 법 제정 이후 운영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한 건을 위원회가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해양관할구역 확정 업무체제도 】

구분	주체	세부 절차	비 고
관할 구역 확정 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관할구역확정기본계획(안) 마련	5년 주기, 필요 시 재검토
		↓ 행안부 사전 협의, 관계기관 및 지자체 의견 수렴	
		↓ 해양관할구역확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해양수산부 장관	↓ 해양관할구역확정기본계획 수립	관보 고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통보
		↓ 해양관할구역확정추진계획(안) 마련	매년 현행화
		↓ 행안부 사전 협의, 관계기관 및 지자체 의견 수렴	
	해양수산부 장관	↓ 해양관할구역확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관보 고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통보 일반인 열람
		↓ 해양관할구역확정추진계획 수립	
관할 구역 확정	해양수산부 장관	↓ 조사 및 측량	← 지자체 확정 신청
		↓ 해양관할구역확정안 작성	
		↓ 지자체 및 행안부 의견수렴	
		↓ 해양관할구역확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해양수산부 장관	↓ 해양관할구역 결정	지자체 통보 (불복 시 현재 권한쟁의 청구)

*자료: 해양수산부

5) 보칙 및 부칙

가. 제정안의 요지

- 안 제23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출입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안 제24조는 전문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 절차를 규정 하려는 것임.
- 부칙 제1조는 법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제2조는 법 시행 전에 법원의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확정된 해양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 조치를, 제3조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분쟁해역에 대한 유예조치를, 제4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중인 해역은 매립지의 귀속 지자체가 최종 결정된 후 해양관할구역을 확정하도록 유예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5장 보칙
제23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의 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어장(漁場), 양식장을 포함한 공유수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토지등에 출입
2. 토지등에 있는 나무, 흙, 시설물, 그 밖의 장애물의 이전·변경
3. 토지등의 조사등에 필요한 장비 등 적치

4. 토지등을 임시도로로 사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출입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출입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토지등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토지등의 소유자등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토지등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토지등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2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원의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의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확정된 해양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분쟁해역에 대한 유예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관할구역 확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분쟁해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을 확정한다.

제4조(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중인 해역에 대한 유예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법」 제5조제5항부터 제10항에 따라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중인 해역은 매립지의 귀속 지자체가 최종 결정된 후에 해양관할구역을 확정한다.

나. 검토의견

□ (토지등에의 출입 등) 안 제23조는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조사등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나 공유수면에 출입, 필요한 장비 등의 적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획정안 도출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나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취지로 보임.

□ (법원의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분쟁해역에 대한 유예조치)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 법원의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확정된 해양관할구역은 이 법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분쟁해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양관할구역을 확정하도록 유예하려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 법에 따른 결정이 상충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질서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예를 들어, 현재 제주도-완도군 간 해상풍력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중인 상황인데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해양관할구역 획정은 유예될 것임.

□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중인 해역에 대한 유예조치) 부칙 제4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중인 해역(예컨대, 군산시와 김제시 간에 새만금 매립지 관련 이견이

있는 상황)은 매립지의 귀속 지자체가 최종 결정된 후 해양관할구역을
확정하도록 하여 매립지 귀속 결정 전 해양관할구역이 확정되어 지자
체의 상황, 지자체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못해 분쟁이 생기게 될
가능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관계부처 의견

(1) 해양수산부

-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부처 간 업무 조정 협의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 및 해상경계 획정 업무를 수행하고, 행정안전부는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 발생 시 조정·해결하는 업무¹²⁾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힘.

(2) 행정안전부

- 안 제13조(해양관할구역획정추진단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추진단은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 업무의 추진을 위한 해양수산부 하부조직으로 보이는데, 정부조직의 합리적·통일적 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 법률에 설치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 해수부 해양정책실(해양공간정책과 등)에서 해양 관할구역 관련 기능 수행이 가능한 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안 제18조(해양관할구역획정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획정안 작성 시 해양 관할구역과

12)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육상 관할구역(해양관할구역 이외의 영역을 말한다)과의 연계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내용을 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418

첨부1

지방자치단체 해양 관할구역 분쟁 현황

구분	시·도	발생연도	분쟁기간	분쟁대상	비고
매립지 (9건)	경남 사천시 / 고성군	1984	35년	발전소 매립지	헌법재판소 결정
	인천 남동구 / 경기 시흥시	1996	2년	신도시 매립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전남 광양시 / 전남 순천시	1997	9년	산단 매립지	헌법재판소 결정
	경기 평택시 / 충남 당진군	1999	22년	항만 매립지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부산 강서구 / 경남 진해시	2001	9년	항만 매립지	헌법재판소 결정
	인천 연수구 / 남구	2003	8년	신도시 매립지	헌법재판소 결정
	인천 연수구 / 중구	2003	8년	신도시 매립지	헌법재판소 결정
	인천 연수구 / 남동구	2003	17년	신도시 매립지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전북 군산시 / 부안군/ 김제시	2013	7년	새만금 매립지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공유수면 (20건)	전남 강진군 / 완도군	1962	-	면허어업	합의
	전북 군산시 / 충남 보령시	1981	21년	조업	대법원 판결
	전북 군산시 / 충남 서천군	1981	17년(계속)	조업	대법원 판결
	충남 당진군 / 경기 화성시 / 인천 옹진군	1981	계속	조업	미해결
	경북 울진군 / 강원 삼척시		-	조업	합의
	경남 통영시 / 부산 강서구	1989	-	조업	합의
	경남 거제시 / 고성군	1991	-	조업	합의
	전남 장흥군 / 완도군	1992	-	조업	합의
	전남 진도군 / 해남군	1994	30년	면허어업	대법원 판결, 합의
	제주 북제주자치시 / 전남 완도군	1996	계속	조업	미해결
	경북 경주시 / 울산 북구	1997	-	조업	합의
	부산 기장군 / 해운대구	1997	계속	조업	미해결
	경남 사천시 / 경남 하동군	1999	-	조업	합의
	전남 보성군 / 고흥군	2001	-	면허어업	합의
	충남 홍성군 / 태안군	2001	14년	면허어업(조업)	헌법재판소 결정
	인천 옹진군 / 충남 태안군	2005	4년	골재채취단지	헌법재판소 결정
	경남 남해군 / 전남 여수시	2005	16년	조업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전북 고창군 / 부안군	2016	3년	해상풍력	헌법재판소 결정
	경남 남해군 / 통영시	2022	3년	해상풍력	헌법재판소 결정
	제주도 / 완도군	2023	계속	해상풍력	권한쟁의심판 진행중

*자료: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추진계획																	
□ 해양관할구역 획정 원칙 ○ 지자체 간 합의를 최우선 고려 ○ 종전의 확인 ○ 형평의 원칙 □ 해양관할구역 획정 절차 ○ 지자체장의 신청 요건 ○ 지자체 간 합의안 및 제출 요건 ○ 절차의 시작, 중지 및 종료 요건 □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 ○ 판결의 확인 및 적용 ✓ 경과조치 적용 대상 ✓ 경과조치 적용 범위 ○ 불문법(관습경계) 존재 여부 확인 ✓ 관습경계 인정요건 ✓ 관습경계 인정 범위, 적용방식 ○ 형평의 원칙 ✓ 해상경계선 획정 기초자료 ✓ 해상경계선 획정 원리 · 등거리 중간선 원칙 · 도서(유무인도)들의 존재 · 행정구역의 관할 변경 · 행정권한의 행사 내용(연혁) · 사무 처리의 실상 □ 해양관할구역 결정 및 등록·표시 ○ 획정심의위원회의 운영(분과구성 등) ○ 결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	□ 해양관할구역 획정 계획 ○ 매년, 해역별 획정 계획 ✓ 해양이용 실태조사 ✓ 행정권한 및 사무처리 확인 ○ 지자체 간 합의안 마련을 위한 기술 지원 ✓ 예산사업 지원 및 표준조례안 마련 ○ 관련 주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 세부 설정 절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세부 절차</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조사 분석</td><td>①자료 수집(판결 사례 등)</td></tr> <tr> <td>↓</td></tr> <tr> <td>②현장조사·검증(관습경계 확인)</td></tr> <tr> <td rowspan="4">획정안</td><td>↓</td></tr> <tr> <td>③설정기점 검토 등 획정</td></tr> <tr> <td>↓ ← 위원회 검토</td></tr> <tr> <td>①②③을 반영한 획정초안</td></tr> <tr> <td rowspan="3">결정</td><td>↓ ← 위원회 검토</td></tr> <tr> <td>획정 최종안</td></tr> <tr> <td>↓ ← 위원회 의결</td></tr> <tr> <td></td><td>공고 및 고시</td></tr> </tbody> </table> ○ 세부설정 순위 ✓ 지자체 신청을 우선 ✓ 신청 지자체 중 사법적 해결을 모색하거나 해결한 구역이 있는 지자체 우선 ✓ 분쟁이 예상되거나 감지되어 중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 연도별 심의·의결 및 자문 계획 ○ 분기별 위원회 운영 일정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일정 □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계획	구분	세부 절차	조사 분석	①자료 수집(판결 사례 등)	↓	②현장조사·검증(관습경계 확인)	획정안	↓	③설정기점 검토 등 획정	↓ ← 위원회 검토	①②③을 반영한 획정초안	결정	↓ ← 위원회 검토	획정 최종안	↓ ← 위원회 의결		공고 및 고시
구분	세부 절차																	
조사 분석	①자료 수집(판결 사례 등)																	
	↓																	
	②현장조사·검증(관습경계 확인)																	
획정안	↓																	
	③설정기점 검토 등 획정																	
	↓ ← 위원회 검토																	
	①②③을 반영한 획정초안																	
결정	↓ ← 위원회 검토																	
	획정 최종안																	
	↓ ← 위원회 의결																	
	공고 및 고시																	